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참 고 자 료	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. 11. 25-26 부산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11. 20. (수)	담당부서	통상분쟁대응과
담당과장	정하늘 과장(044-203-4880)	담 당 자	김효중 사무관(044-203-4887)

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, 2차 양자협의 결과

□ 한·일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(DSU) 제4.3조에 근거하여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(DS590)의 두 번째 양자협의를 11월 19일 제네바에서 개최함.

* 우리 정부는 '19.9.11 일측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(양자협의 요청)

○ 1차 양자협의(10.11)와 동일하게 국장급 수석대표로 개최되었으며, 우리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, 일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함.

□ 우리측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*하고,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함.

* WTO 상품무역협정(GATT 1조·11조·10조 등), 서비스협정(GATS 6조 등),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(TRIPS 3조·4조·28조 등),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(TRIMS 2조 등) 등 위배

○ 아울러, 일측이 제시한 조치 사유*와 무역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장**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,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.

*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,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,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등

** 민생용도가 확인된 거래는 수출을 허가해주고 있어 한국 기업의 조달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문제가 없음

□ 우리 정부는 금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절차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김효중 사무관(☎ 044-203-48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우리측 양자협의요청서 주요 내용

□ **(제소대상) 3개 품목**(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, ② 포토레지스트, ③ 불화수소)에 대한 **일본**의 **對韓 수출제한조치**

○ 일본은 **3개 품목**의 **對韓 수출**시 **포괄허가제**를 **개별허가제**로 **변경 공표**(7.1)·**시행**(7.4~)

□ **(법적근거)** **(상품)** GATT 1조·11조·10조 등
(기술) TRIMS 2조, GATS 6조, TRIPS 3·4·28조

【 양자협의요청서 주요 내용 】

일본 조치	• 3개 품목 및 관련 기술이전시, – 기존 포괄허가 사용 불가(7.4일자로 효력 소멸) – 개별허가 신청 의무화 – 日 경제산업성 본청에서만 개별허가 접수 (지역 심사국에 신청 불가) – 개별허가 관련 복잡한 수출절차 의무화
주요 위반근거	•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, –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T) 제1조·제11조·제10조 등 – 무역원활화협정(TFA) 제2조·제6조·제7조·제8조·제10조 등
	•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 관련, –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(TRIMs) 제2조 –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(TRIPS) 제3조·제4조·제28조 –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S) 제6조

붙임 2 WTO 분쟁절차도

